

## 부속서 II 주 해

1. 이 부속서의 당사국의 유보목록은 제8.13조(비합치 조치) 및 제9.6조(비합치 조치)에 따라, 그 당사국이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·하위분야 또는 행위를 규정한다.

가. 제8.3조(내국민 대우) 또는 제9.2조(내국민 대우)

나. 제8.4조(최혜국 대우) 또는 제9.3조(최혜국 대우)

다. 제9.5조(현지주재)

라. 제8.9조(이행요건)

마. 제8.10조(고위경영진 및 이사회), 또는

바. 제9.4조(시장접근)

2.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.

가. **분야**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.

나. **관련의무**는 제8.13조(비합치 조치) 제2항 및 제9.6조(비합치 조치) 제2항에 따라 유보된 분야·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에 언급된 조항(들)을 명시한다. 그리고

다. **유보내용**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·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.

3. 제8.13조(비합치 조치) 제2항 및 제9.6조(비합치 조치) 제2항에 따라, 유보항목의 **관련의무**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들은 그 유보항목의 **유보내용** 요소에 적시된 분야·하위분야 및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.

4. 유보항목을 해석함에 있어,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동등하게 고려된다.

5.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현지주재(제9.5조)와 내국민 대우(제9.2조)는 별개의 규율이며 현지주재(제9.5조)와만 불합치되는 조치는 내국민 대우(제9.2조)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.